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4973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민제, 정원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3. E

4.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5. 1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가단65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2,293,084원 및 그중 1,660,505,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4년 경상남도로부터 「G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도급공사는 2009년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그 후 공법 변경, 설계 변경 및 공사물량 변경 등의 이유로 5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9년에 완료되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5. 17.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및 배수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796,550,000원, 공사기간 2012. 5. 1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피고 D, E, F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2012. 5. 23. 원고와 아래 내용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함), 원고가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가입금액 1,795,368,850원 한도 내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그 지급보험금 상당 구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기성고 검사결과에 의하면, 2013. 9. 30.경 기성고는 약 15.28%(기성금액 3,717,605,426원)에 불과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10. 17. 내부 사정을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일부 수량에 대한 감액계약을 요청하였고, 2013. 11. 18. 다시 감액계약을 요청하였다. 그 무렵 원고보조참가인은 당초 예정한 공사기간 안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C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2013. 12. 23.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 계약기간(2005. 5. 17.~2013. 12. 31.)이 도래가 되어 귀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당사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당사 자금사정으로 거래선 미불금 누적에 따른 채권가압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사수행이 불가한바, 당사는 상기현장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2. 18. 피고 C에게 피고 C의 공사포기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3.경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1,795,368,8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9. 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1,660,5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나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어 2014. 2. 1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전액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계약보증금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피고 C과 원고보조참가인의

정산합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었고, 기성고에 따른 계약보증금 정산을 하면 계약보증금 잔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C의 공사 중단 이후에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보전을 위한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을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과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을 통해 ‘피고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공정율과 관계없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전액 귀속되고, 피고 C은 위약벌과 별도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반계약조건에서 ‘피고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서(보증보험증권)상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인(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지급을 상대방(피고 C)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계약 문언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도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거나 보증인(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료 여부

1)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등 참조). 계약기간 중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 갑나 제2, 3, 10 내지 17호증, 을 제3,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3. 8.경까지 다수의 채권자가 피고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 C은 2013. 10. 17. 내부 사정을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일부 수량에 대한 감액계약을 요청하였고, 2013. 11. 18. 다시 감액계약을 요청하였으며, 2013. 12. 23.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 계약기간(2005. 5. 17.~2013. 12. 31.)이 도래가 되어 귀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당사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당사 자금사정으로 거래선 미불금 누적에 따른 채권가압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사수행이 불가한바, 당사는 상기현장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채권가압류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나 제4 내지 7, 15, 1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원도급공사의 공법 및 설계 변경, 공사기간 변경, 그에 따른 경상남도의 예산 배정 때문에 지체되다가, 2013. 12. 31.경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C의 정산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 경상남도로부터 수주한 원도급공사는 원래 2004년 시작되어 2009년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공법 변경, 설계 변경 및 공사물량 변경 등의 이유로 5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9년에야 공사가 완료되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1년 단위로 경상남도와의 협의하여 세부 공정 및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경상남도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척도 최초 예정하였던 것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던 중이던 2013. 11.에도 원도급공사의 사업비 조정을 이유로 준공기한이 2013. 12. 31.에서 2015. 12. 31.로 변경되었다.

다) 2013. 9. 3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시작된 지 약 16개월이 지났고 그 준공기한인 2013. 12. 31.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 C의 기성고는 약 15.28%에 불과하였는데, 피고 C의 기성고가 위와 같이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C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라) 2013. 12. 31.까지 피고 C의 위 기성고 15.28%에 변화가 없었다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3. 12. 31. 기준 피고 C의 미시공 금액은 22,702,037,16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26,796,550,000원 × 미시공률 84.72%)에 달한다. 그런데 원도급공사에 관한 경상남도의 2012년도 예산 18,350,275,780원 및 2013년도 예산 16,735,359,110원(2012년도 예산 중 이월된 2,805,359,110원 포함)의 합계 35,085,634,890원 중에서 2013년까지 집행되지 않고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523,749,810원(피고 C의 미시공 금액의 약 11%)에 불과하다. 이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2013년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배정한 예산 자체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 피고 C은 '2013년 이후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2013. 12. 23.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하고, 채권가압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사수행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공사 포기를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C은 공사대금을 기성금액에 해당하는 4,089,365,968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2013. 12. 31.자 변경 합의서(을 제4호증,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2. 경상남도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피고 C의 실제 기성금액인 4,089,365,968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위 2013. 12. 31.자 변경 합의서도 경상남도에 제출하였다(을 제10호증).

바) 원고보조참가인이 2015. 2. 경상남도에 제출한 위 통보서(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하도급 부분에 관한 경상남도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급액이 4,762,009,558원(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의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그 후 원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원래 예정보다 훨씬 늦은 2019. 3.경 완료되었고 원도급공사도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피고 C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석준협, 판사 노호성, 판사 양환승